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올해로 한-인도 CEPA가 발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효 전인 2009년 약 121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 국간 교역은 2019년 대인도 수출 약 160억 달러, 대인도 수입 약 56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돼, 한-인도 CEPA는 한국이 체결한 양자 FTA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인도 측의 개정 압력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FTA다.

금년 9월 21일부터 신규 도입된 통관 전 수입물품에 관한 제반 원산지 증명정보를 수입자가 사전 제시케 하는 新원산지 규정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지속 확대 추세이고 한-인도 CEPA 개정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 세관 적용 HS코드의 상이, 강화추세인 BIS 인증, 추가 서류 요청 등 한국과 다른 인도의 통관, 행정관행과 무역 균형화 압력으로 그동안 우리기업이 한-인도 CEPA 실제 이용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KOTRA는 인도를 포함 세계 7개국, 15개소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인도의 경우 2018년, 뉴델리 무역관. 2019년에 남부 첸나이 무역관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 통관 현장 안내 및 네트워크 구축, 사후 해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재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 사례집은 이러한 KOTRA의 인도 CEPA 활용센터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 애로 사례와 대응방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CEP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특히 한-인도 CEPA 소개 외 실제 사례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 세번 분류, 준비 서류, 인증 등을 인도 현지 주요 기관 정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현장의 여러 애로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저희 센터에 적극 피드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양국 정부 건의 및 현장 애로 개선에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김문영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

2020년 10월

CONTENTS

I 한-인도 CEPA 및 인도의 FTA 소개

01	한-인도 CEPA 개요	8
02	인도 무역협정 개요	9

II 한-인도 CEPA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1	16
02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2	17
03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3	18
04	한-인도 CEPA 사후적용 불가	20
05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CEPA 미적용	22
06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1	23
07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2	25



III 인도 통관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28
02	WCO HS2017 업데이트 미비	30
03	까다로운 반송 승인과정	31
04	중고설비 과세가격 산정 애로	33

IV 인도 인증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인증획득 기간 상이	36
02	인도표준국(BIS) 검사관 파견 애로	37
03	인도 인증 규격과 제품 사양 상이	39

[참고]	1. 주요기관 연락처	40
	2. 인도정부 통관방식 변경을 통한 원산지 관리 강화 정보	41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 PART •

I

한-인도 CEPA 및 인도의 FTA 소개

01 한-인도 CEPA 개요

02 인도 무역협정 개요

01

한-인도 CEPA 개요

한-인도
CEPA란?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CEPA)라는 용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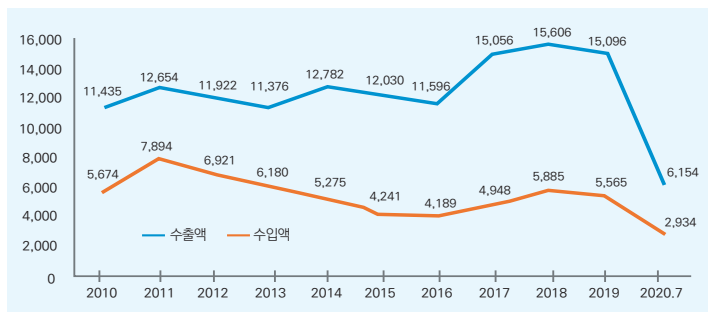
CEPA 목적
및 의의

CEPA는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를 촉진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양국의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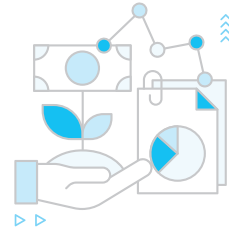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 1월 1일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인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 GDP의 거대시장으로, 한-인도CEPA는 인도로서는 OECD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對인도 교역금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한-인도
CEPA의
종료

한-인도 CEPA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계약상대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될 수 있다. (한-인도 CEPA 제 15.8조)



02

인도의 무역협정 현황

인도 무역협정 개요

인도는 1993년 4월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이하, SAPTA)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15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이다.

인도의 무역협정 체결 목록

연번	협정명	국가	서명일	발효일
1	인도-스리랑카 FTA (India Sri-Lanka 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1998.12.28	2000.03.01
2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India-Afghan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	2003.03.06	2003.05.13
3	India-Thailand FTA - Early Harvest Scheme (EHS)	태국	2003.10.09	2004.09.01
4	인도-싱가포르 CECA (India 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2005.06.29. * 개정의정서 (Protocol) 서명일: 2007.12.20.	2005.08.01 * 개정의정서 (Protocol) 발효일: 2007.12.20
5	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 *Safta replaced Sapta in 2006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01.04	2006.01.01
6	인도-부탄 FTA (India Bhutan Free Trade, Commerce & Transit Agreement)	부탄	2006.07.28	2006.07.29
7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is a rename of the Bangkok Agreement (BA) from 1st September 2006. The Bangkok Agreement was effective from 31st July 1975.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5.11.02	2006.09.01

인도의
무역협정
현황

연번	협정명	국가	서명일	발효일
8	인도-칠레 PTA (India-Chil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2006.03.08	2007.09.01
			2017.05.16. (연장 서명일)	2017.05.16. (연장 발효일)
9	인도-MERCOSUR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4.01.25 (본협정) 2005.3.19 (부속서)	2009.06.01
10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India Nepal Treaty of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11	인도-한국 India Korea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2009.08.07	2010.01.01
12	인도-핀란드 AEC (India Finland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03.26	2010.03.26
13	인도-아세안 FTA (Indi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	2009.08.13	2010.06.01
14	인도-말레이시아 CECA (India 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말레이시아	2010.10.27	2011.07.01
15	인도-일본 CEPA (India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1.02.16	2011.08.01

출처: 인도 대외무역부(DGFT)

또한, 인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 FTA, 유럽 FTA 등을 포함한 22개의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 진행 혹은 검토 중이다.

인도의
무역협정
현황

연번	협정명	국가	비고
1	인도-태국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태국	30차 협상 진행 중
2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TA(Free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19차 협상 진행 중
3	인도-GCC (The Member Stat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2차 협상 진행 중
4	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위스, 보츠와나, 나미비아	7차 협상 진행 중
5	제 2차 인도-싱가포르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3차 협상 진행 중
6	인도-칠레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3차 협상 진행 중
7	인도-유럽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유럽	15차 협상 진행 중
8	인도-유럽 자유 무역 연합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7차 협상 진행 중
9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알제리, 멕시코, 앙골라, 모로코,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니카라과, 베냉,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파키스탄, 브라질, 페루, 필리핀, 카메룬,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대한민국, 쿠바, 루마니아, 싱가포르, 에콰도르, 스리랑카, 이집트, 수단, 태국, 가나, 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튀니지, 아이티, 탄자니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베트남, 이라크, 우고슬라비아, 리비아, 자이레,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3차 협상 진행 중

인도의
무역협정
현황

연번	협정명	국가	비고
10	인도-뉴질랜드 FTA (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11차 협상 논의 중
11	인도-캐나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캐나다	11차 협상 논의 중
12	인도-호주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호주	10차 협상 진행 중
13	인도-인도네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태국	
14	인도-동남아시아공통시장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TA(Free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Eritrea,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스위스,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3차 협상 진행 중
15	인도-이스라엘 FTA (FreeTradeAgreement)	이스라엘	9차 협상 진행 중
16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협의 보류
17	인도-미국 Trade Policy Forum Joint Statement	미국	
18	인도-방글라데시 FTA (Free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19	인도-스리랑카 FTA (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9차 협상 진행 중
20	인도-몰디브 FTA (Free Trade Agreement)	몰디브	
21	인도-몽골 FTA (Free Trade Agreement)	몽골	
22	인도-한국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8차 개선 협상 완료

출처: 인도 대외무역부(DGFT)

한-인도 CEPA 개정협상 현황

발효 첫 해인 2010년, 한-인도 CEPA 활용률은 수출 15.4% 수입 7%로 저조하였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양허율 역시 85%로 타 FTA(일-인도 CEPA 약 90%) 대비 낮았다. 이후 양국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CEPA를 활용,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20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에 개정 협상 성과를 내자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2019년 6월 제 8차 협상 등 꾸준한 협상을 통해 한-인도 CEPA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 무역협정 관련 주요 이슈

인도는 2013년 4월 19일 인도-에콰도르 JETCO(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를 마지막으로 어떠한 FTA도 발효하지 않고 있다.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인도는 수입보다는 자국 내 제조를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FTA는 인도의 대외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FTA가 국내 제조를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더욱이 이러한 교역체제 내에서 인도의 대외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FTA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2014년 이후 FTA 협상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1월 4일 실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정상회담에서도 "타결된(RCEP)협정문에 인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인도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인도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는 2010년과 2011년에 체결된 한국, 일본 및 아세안 FTA를 통해 FTA 협상 시 시간제한을 두거나 서둘러 끝내면 안 되는 것을 배웠고, 국가와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는 조심스럽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FTA 체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19년 12월 4일 기존 FTA 활용 현황을 검토하기 위한 FTA 모니터링 전담부서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2020년 2월 연방 예산안 발표 시에는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기존 FTA에 대한 검토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2020년 들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기존 체결된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 특히 대인도 FTA 체결국을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높이고, 수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40% 초과로 상향하거나 기존 FTA 조건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The Economic Times, 2020.8.4.)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 PART ·

II

한-인도 CEPA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 01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1
- 02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2
- 03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3
- 04 한-인도 CEPA 사후적용 불가
- 05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CEPA 미적용
- 06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1
- 07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2

01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1



주요 포인트

한-인도 CEP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당국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인도는 대부분 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서 발급하고 있다.



사례

우리기업 A사는 인도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물품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바이어 측으로 인도하였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인수받은 바이어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세관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한국 관세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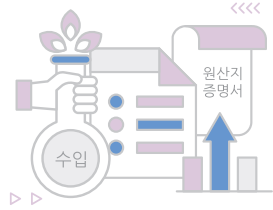
바이어는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발급기관 중 하나라고 설득하였으나, 한국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진위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CEPA 적용을 거부하였다. 바이어 측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우리기업 A사가 KOTRA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KOTRA가 세관 측에 '한-인도 CEPA 제 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나서 CEPA 적용이 처리 될 수 있었다.

전문가
코멘트

한-인도 CEPA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문 부속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발급 받은 기관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10월 8일 관세청이 두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사이트 (www.customs.go.kr/co.html)를 구축하면서, 모든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

우리기업은 인도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문제가 생기면 해당 URL을 세관에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02

한-인도 CEPA 원산지 진위여부 2

주요 포인트

양국이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C/O)을 구축 중에 있으나, 2020년 8월 기준 아직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인도 CEPA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판단에 따라 CEPA 특혜 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도법인 B사는 평소와 같이 한국 본사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하였다. 이미 한-인도 CEPA를 활용 중인 B사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 노이다(NOIDA) 세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관 측에서 발급 기관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협정적용을 거부하고 통관을 보류하였다.

확인 결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변경한 우리 측 발급자 서명이 인도 측 내부문제로 세관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었다.

동 건은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이 노이다(NOIDA) 세관장을 면담하고 문제를 소명한 후 한-인도 CEPA를 적용 받아 수입통관 될 수 있었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는 2017년부터 통합된 온라인 세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주(State) 마다 시스템 내용 및 업데이트 시기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위 사례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업데이트 된 발급자 서명이 인도 시스템 내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로 우리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문제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한국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042-481-3212·3232)에 문제를 알리고, KOTRA 등 현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OVID-19 확산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동의 제약이 우려되자 2020. 4월 이후 양국 세관은 수입자가 CEPA 특혜 관세 적용 신청 시 전자발급 C/O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03

한-인도 CEPA 원산지 진위여부 3

 주요 포인트

인도는 2020년 3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시스템(주소 <https://coo.dgft.gov.i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완전한 온라인 발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수출자는 더 이상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졌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명이 출력되지 않거나 QR코드가 출력되지 않는 문제가 간혹 발생 할 수 있다.

 사례

한국 A사는 인도 B사로부터 약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한-인도 CEPA를 활용하여 수입하고 있다. 2020년 3월 인도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시 이후, 한국 A사는 인도 B사로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수 받았으나, 해당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와 발급기관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 세관은 통관을 진행하던 도중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통관을 보류하였고,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로 인해 CEPA 협정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A사는 KOTRA(첸나이 무역관)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KOTRA는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된 QR코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한국 A사는 해당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한국세관에 소명하고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통관하였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는 2019년 9월 19일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한국 관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2020년 3월부터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였다.

이후 4월 7일부로 인-일본 CEPA 및 인-아세안 FTA 등 6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발급으로 전환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면 전산화하였다.

인도측 C/O가 전자적으로 바뀌면서 기존 원산지증명서상 홀로그램 대신 QR코드가 찍히는 변화가 있었다.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인도봉쇄로 인해 사무실기반에서 행하여졌던 발급기관 스템프, 발급권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4월 안정화 이후에는 이들 항목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불완전한 시스템과 각 지역 발급기관의 환경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증명서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발급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증명서 발급 사이트(<https://coo.dgft.gov.in/>)에서 발급 번호를 토대로 확인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상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근거를 가지고 수입국 세관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사이트 메인화면 내 발급번호 입력창〉

Enter Your Certificate Number	Verify Certificate
-------------------------------	--------------------

04

FTA 사후적용 불가

 주요 포인트

한-인도 CEPA 협정문에 의거하여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수입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시 지불했던 관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실무적으로 FTA 사후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 4.8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례

인도 진출 A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인도에서 제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로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나, 급한 경우에는 항공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원재료는 한-인도 CEPA 적용 대상으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A사는 수출신고 4~5일 이후에 한국 본사로부터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받아 관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해상운송의 경우 한국에서 인도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문제없이 CEPA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항공으로 수입할 경우 물품은 1~2일 내 인도에 도착은 하지만 CEPA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4~5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A사는 인도 세관에 몇 차례 FTA 사후적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세관 측에서는 관세를 내고 물품을 통관하거나, 아니면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한 이후 CEPA를 적용하여 통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A사는 급한 이유로 항공으로 해당 원재료를 수입하였고, 보세구역에서 4~5일이 경과하면, 수혜 받을 수 있는 관세 금액보다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더 가산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번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하고 CEPA사후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코멘트

한-인도 CEPA 협정문 제 4.8조에 의거하여 수입 시 제출하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 각 지역세관에서는 협정에 따르는 국내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후신청에 의한 환급에 부정적이고, 수입자도 절차가 번거롭고 인도의 행정환경상 이미 납부한 관세환급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게 됨으로써 실무적으로는 통관 이후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인도와의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사후신청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협상의 진도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위 사례처럼 항공으로 물품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세관원과 협의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통관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통관하는 시기를 늦출 뿐, 관세와 함께 신고지연가산세, 보관 및 장치에 따른 체화료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입국으로 송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적인데, 한국의 수출신고필증은 물품의 적재 전 최대 30일 이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한국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에만 당해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면 됨), 미리 수출신고를 하여 필증을 확보하면 적기에 원산지신청서를 교부받아 수입국에 송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을 세관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구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교환시스템이 완성되면 증명서 원본의 지연 도착, 증명서의 진위 논란 등이 해소되는 동시에 특혜신청이 편리하게 되어 CEPA 활용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05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CEPA 미적용

 주요 포인트

인도 통관 시 제출하는 모든 무역서류는 HS코드, 가격 및 수량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좋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 4.7조에 '서류의 기재내용 간 경미한 차이는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미한 차이는 그것을 판단하는 세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7조: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한국제조기업 A사는 인도로 진출하기 위해 수출업무를 대신해줄 무역전문상사 B사와 계약을 맺었다. 무역전문상사인 B사는 CEPA적용을 조건으로 인도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신고까지 완료하였다. 수출신고 완료 후, A사는 B사의 요청에 따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약 2주 후, 전문무역상사인 B사는 수입자로부터 CEPA 관세를 적용 받지 못해 계약조건보다 관세를 10% 더 지불하였다고, 결제금액의 90%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제조사 A사가 기재한 HS코드와 무역상사 B사가 기재한 HS코드의 8자리가 상이하여, 세관원이 '이는 전혀 다른 품목을 의미한다.'며 CEPA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두 회사는 결국 수출금액의 90%만 결제 받았고, 피해액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전문가 코멘트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도의 통관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도의 통관환경은 비관세장벽이 높고 세관원의 자의적 해석경향이 많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통관애로는 비중 높은 애로항목 중 하나이다. 무역서류 불일치 발견 후 수정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인도 행정관습 상 한번 서류 불일치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개는 통관 지체에 대한 벌금 및 체화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하더라도 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기업은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신용장, 물품명세서,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의 금액, 수량, HS코드 등 중대한 오류뿐만 아니라, 사소한 오류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06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1

 주요 포인트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어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품목분류 코드이다.

HS코드는 국제협약에 따라 6자리는 국제공통으로 사용되며, 7단위 이하의 분류체계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용한다. 한국은 10단위, 인도는 8단위 품목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HS코드가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이로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HS코드가 변경될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변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FTA를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례

인도에 진출한 한국 A사는 한국에서 볼트 및 너트 제조를 위한 합금강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A사는 해당 합금강을 HS코드 7229.9090으로 한-인도 CEPA 5%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오랜 기간 동안 수입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인도세관으로부터 해당 HS코드를 7227.9040으로 변경해야한다고 통지 받았다.

인도 세관이 통지한 HS코드 7227.9040은 한-인도 CEPA 양허품목이 아니었고, 종전 사용하던 HS코드를 소명하지 못 할 경우 5년 동안 감면받은 CEPA 적용관세와 기본관세와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KOTRA 첸나이 무역관은 A사로 하여금, 한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해당 물품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서류 토대로 인도 세관에 서한을 보내 볼 것을 추천하였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 세관의 갑작스런 품목변경 통지는 기업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CEPA 적용 품목에서 CEPA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수혜 받은 관세를 전부 소급적용하여 부과당하고, 부당한 수혜에 따른 벌금까지 청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진출 시 임의적인 HS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또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HS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격지 거래인 국제무역거래에서 통관 환경,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의 제조자 포함) 수출입국 관세당국에(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 희망품목의 품목분류, 관세율 등을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받고 그 심사의 내용이 실제 통관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품목분류 판결에 수입자, 수출자 및 세관이 구속되어, 품목분류 변경이라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및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도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대비로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인도 내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소견서는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방어책은 될 수 없다.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은 대부분 분쟁이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인도 진출 시 CEPA 적용유무나 관세 혜택에 따른 임의적인 품목분류가 아닌, 해당 품목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WCO HS협약에 따른 HS 코드에 의거하여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2

 주요 포인트

인도 수입통관 시 세관 판단에 의해 HS코드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준비했던 원산지증명서와 새로 부여받은 HS코드 간 정보가 저촉된다. 이 경우 사전에 발급받은 기존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므로, 새로운 HS코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던지 CEPA적용 없이 기본관세를 내고 통관해야한다.

 사례

한국 의약품기기 제조업 B사는 KOTRA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첫 수출을 진행하였다. B사는 기존 중국 수출 시 사용했던 HS코드 9018-90.40을 사용하여 수출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포워더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물품이 인도 도착 후 바이어로부터 세관 측에서 HS코드를 9018-90.90으로 판단하여,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두 HS코드 모두 CEPA 적용 시 관세 면제 대상 품목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HS코드가 변경되어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기본관세 7.5%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다.

B사는 새로운 HS코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총 6일이 소요되어 체화료가 740 달러가 부과되었다. B사는 결국 다음 주문에서 200달러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바이어와 합의보고 수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전문가 코멘트

한-인도 CEPA는 전체 품목 중 8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대부분은 변경된 품목분류에 의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CEPA 특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EP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인도로 교부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위 사례처럼 통관 체화료 및 지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게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은행 보증서(Bond)를 통해 먼저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 보증서(Bond)를 발급 받고, 그것을 토대로 세관 통관 확인증(NOC)을 발급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추후 은행 보증서(Bond)를 돌려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기간과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출입전에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 세관에게 문의하고 수출입 하는 것이 좋다.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 PART •

III

인도 통관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 01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 02 WCO HS2017 업데이트 미비
- 03 까다로운 반송 승인과정
- 04 중고설비 과세가격 산정 애로

01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주요 포인트

인도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입통관 시 인도 세관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종종 수입자 입장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되고 있다. 세관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통관이 보류되는 기간에는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부과된다.

 사례

현지 화장품 수입사 R사는 한국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여 인도 내 판매하고 있다. 5년의 인도 수입 경험이 있는 R사는 2019년 8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였다.

인증을 사전에 완료한 R사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세관 측으로부터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유는 수입가격(CIF가격)이 최종소비자가격(MRP)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였다. 세관은 수입가격을 고의적으로 낮게 산정하여 관세를 탈루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최종소비자가격(MRP) 및 수입가격이 산정된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수입사인 R사 입장에서는 인도 내 법인세, 인건비, 마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출가격 증빙서류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수출자 입장에서선 원재료 및 인건비 등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R사는 자신의 증빙서류를 토대로 세관원과 합의하여 수출자 증빙 없이 통관을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2주 이상이 소요되어 막대한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부대 이용료(CFS Charge 등)를 납부하였다.



전문가 코멘트

본지사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는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관세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신고제도(Special Valuation Branch(SVB) process)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MRP)이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 위 사례처럼 세관은 관세 탈세 방지 목적으로 수입가격산정기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물품가격 결정 기준은 민감한 기업정보로 대부분의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세관과 수입자의 최종소비자가격(MRP)의 결정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수출자로 하여금 인도 세관에 직접 해당 서류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관 상황에서 인도 세관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세관 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시, 정확히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야하며, 필요시에는 세관원에게 기업의 유통구조와 마진에 대해 이해시킴으로써 추가서류 요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02

인도 세관의 WCO HS2017 업데이트 미비

 주요 포인트

인도를 포함,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2017년(이하, HS2017) 버전을 2017년 1월 17일부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인도 세관 시스템에도 HS2017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있으나, 2009년 체결되어 HS2007년 버전이 사용된 한-인도 CEPA 협정 대상 품목들이 인도 세관 시스템 상 HS2017 버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HS2017 버전으로 해당 시스템에 HS코드를 입력할 경우, 한-인도 CEPA 적용품목임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가 간혹 있다.

 사례

현지 식품기업 P사는 한국으로부터 두유를 인도로 수입하고자 한국 두유 제조자와 계약을 맺었다. KOTRA로부터 두유(HS2202.99)가 한-인도 CEPA 적용대상 품목임을 안 내받은 P사는 한국 제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인도세관 수입통관 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관 측에서 두유(HS2202.99)는 CEPA 적용 품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KOTRA 뉴델리 무역관 협조로 확인 결과, HS 2007년 버전이 적용된 한-인도 CEPA 상에는 두유가 HS 2202.90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현재 인도 및 한국에서 사용 중인 HS 2017년 버전에는 두유가 HS 2202.99로 분류되어 인도 세관시스템 상 적용 품목이 아니라고 나왔던 것이다.

KOTRA 및 현지기업 B사가 세관원을 면담하고 소명한 결과, '자주 수입되는 품목이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미비했다'며 HS코드 업데이트 및 CEPA 적용을 약속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는 2017년부터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전자 수입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전자 수출통관 시스템을 전국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은 증빙 시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기타 부대비용이 면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관원은 판단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세관 공무원의 수입제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통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현지 통관사에게 100% 의존하는 것보다 수입업체 실무자가 통관진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도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03

까다로운 반송 승인 과정

 주요 포인트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다시 반송하기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수하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포기각서(NOC)를 받고 반송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부과된다.

 사례

동사는 2018년 인도 바이어로부터 철 스크랩을 구매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계약 협상 중 바이어가 철 스크랩 상태 확인을 위해 한 컨테이너를 먼저 수입해보고 연간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기업은 종전에 거래 해본 바이어가 아니었기에, 신용장(L/C)거래를 원했지만, 바이어 측에서 샘플용 컨테이너는 후불지급(D/P) 방식으로 거래하고, 연간 거래가 성사되면 L/C거래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래이었기에 한국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다. 신용조사 결과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급으로 평가되어 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 샘플용 컨테이너 수출 계약을 맺고 수출하였다.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제품 출항 약 2주 후 바이어가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 동사는 이미 단가에 합의하였으므로,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바이어는 단가를 맞추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동사 입장에서는 마진도 워낙 작은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가격 인하 요청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선적이 인도에 도착 후, 다른 바이어를 수소문해 전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화료가 \$20,000가 넘어갔고, 이를 안 새로운 바이어도 계약 막바지에 구매를 포기하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동사는 반송(Ship-Back)을 결정하였으나, 반송을 위해서는 최초 수하인(Consignee)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협조적이지 않았던 바이어로 인해 반송까지 지체되자 KOTRA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KOTRA 측에서 바이어 및 세관 측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까다로운 반송 승인 과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동사는 결국 약 3달치 체화료(Demurrage Charge)를 납부하고 반송하게 되었다.



전문가 코멘트

한번 인도에 물품이 도착하면 반송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물건을 반송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및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하인(Consignee)의 포기각서(NOC)가 필요하고, 이후 해당 수하인의 포기각서(NOC)를 기반으로 세관에게 반송승인 공문을 발급 받아야한다. 세관의 반송승인 공문을 받아도, 각종 부대비용과 선사 보관료를 납부해야 반송이 진행될 수 있다.

수하인(Consignee)이 포기각서(NOC)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세관 명의의 포기각서(NOC)를 발급받아 반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거래 당사자의 신용이 확실히 확립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신용장(L/C)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04

중고설비 과세가격 산정 애로

 주요 포인트

중고물품 수입은 일반 수입품과 통관 및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다. 일반적인 중고 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거나 수입국 내에서 감정평가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인도 역시 법적으로는 수출국 감정평가서와 인도 내 감정평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종종 수출국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도 '과세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수입항 내 감정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한국 A사는 중국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설비를 인도로 수출하게 되었다. 한국 A사는 중국 공인기관으로부터 중고설비 과세가격을 360만 달러로 산정 받고, 인도 수입관세 7.5%(27만 달러)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 인도로 이전하였으나, 인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 측이 '중고설비 과세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해당 중고설비의 과세가격을 575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높아진 과세가격으로 기존 27만 달러였던 관세가 43만 달러까지 인상되었고, 세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관 체화료(Demurrage charge)까지 부과 되었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로 중고설비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공인 감정기관의 중고설비 과세가격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해당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금액이 측정된다. 다만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실품 검사 후 해당 증명서 상 과세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하면, 인도 수입항 내 에이전시를 통해 과세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도 있다.

인도 내에서 중고설비 과세가격이 다시 책정되면 대부분은 과세가격이 기존 책정된 과세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통관에 지체가 발생하므로 기업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설비를 인도로 수출함에 있어 관세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세관 검사 후 오히려 평균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 통관 시 세관 측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적이면서도 시장가격에 맞는 과세가격을 책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 제조연도 이후 10년 미만이며, 수입 이후 5년 이상 사용가능한 설비만 수입이 가능하고, 외관을 과도하게 도색하여 신규장비처럼 보이게 되면 세관원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흠을 가리는 정도로만 도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중고설비의 경우에는 100% 실물검사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 및 패키징리스트 내 중고설비라고 명시해야한다. 또한, 설비 패키징 포장 완료 후 컨테이너 들어 전개 기준으로 포장 전면 부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 제품명 및 표식, 포장박스 번호도 기재되어야한다.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 PART •

IV

인도 인증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 01 인증획득 기간 상이
- 02 인도표준국(BIS) 검사관 파견 애로
- 03 인도 인증 규격과 제품 사양 상이

01

인증획득 기간 상이



주요 포인트

인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BIS(인도표준국), CDSCO(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FSSAI(식품) 등 다양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의 인증 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인증 필요 품목 중 미 인증 품목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거부된다. 특히 인증 제도별로 최대 인증에 걸리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해당 기간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인도로 처음 수출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례

한국 A사는 인도 수출을 위해 수개의 인도 수입업체들과 접촉 하였고, 이 중 벵갈루루 소재의 한 업체와 마스크팩 수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도 내 수입 화장품 유통을 위하여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도 상당히 많고, 필요서류 기준 또한 까다로운 편이었다. 나아가, 외국기업은 인도 내 별도 법인설립을 하지 않는 한, CDSCO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인증 등록 절차를 인도 수입업체가 진행해야하는데, 피드백이 느린 인도 업체의 특성 상 소요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다. 신청일로부터 7주~9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총 전체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었고, 신청비용 또한 2018년 12월 기점으로 카테고리 당 \$250달러에서 카테고리 당 \$2,000달러로 인상되어 적지 않았다.

전문가
코멘트

인도 인증제도는 각 제도마다 최대 인증소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부가설명으로 '사정에 따라 인증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도 인증제도 시스템 역시 각 기관마다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인 CDSCO와 인도 표준국 인증인 BIS 인증은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2018년 온라인시스템 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줄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완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적으로 화장품 인증은 최대 인증소요 기간 내 인증 발급이 되는 편이다. 다만,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이때 요청 사항만 보완하여 신속히 제출하면 기간 내 인증 발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통 7~9주 내 등록허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신청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인증비용 및 품목은 계속적으로 추가되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화장품 인증비용이 약 10배 증가하였고, BIS 인증 대상 품목도 1년 만에 167개에서 29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02

인도 표준국(BIS) 검사관 파견 관련 애로

주요 포인트

인도 표준국 인증제도인 BIS 인증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공공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다.

BIS인증은 'Mark' 및 'Registration' 제도로 나뉘지며,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직접 공장 실사를 진행해야하고, 'Registration' 제도는 인도 내 샘플검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Mark' 제도에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Registration' 제도에는 키보드, 모니터, IT 제품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5월 기준 BIS 인증 품목은 'Mark' 제도가 238개, 'Registration' 제도가 61개 품목이다.

사례

한국 철강회사인 A사는 2015년부터 인도로 한 달에 약 350톤을 인도로 수출 중이었다. 그러나 2019년 수출 중이던 철강 품목들이 2019년부터 BIS 인증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BIS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수출이 불가하게 되었다. 한국 A사는 인도 BIS 인증 에이전시를 고용해 빠르게 인증 신청하였고, 신청 후 3개월 내 파견된다는 BIS 검사관이 6개월 동안 파견되지 않았다.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BIS측에 검사관 인력이 부족하여, 당장 검사 스케줄을 잡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수출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피해액은 44억 원 이상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동 사는 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BIS 철강 담당 국장을 면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검사관이 파견되었으나, 수출 지연으로 인한 동 사의 피해는 60억 원 이상이었다.



전문가 코멘트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하, BIS)는 배터리, 물, 우유, 철강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산업제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인도 표준국 인증제도이다. BIS 인증제도는 'Mark 제도'와 'Registration' 제도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인증절차가 간단한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검사관을 파견해야하는 'Mark' 제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샘플을 수입하여 BIS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공장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비용은 1,000루피(약 16,000원)에 소요기간은 15~90일인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Mark'제도는 검사관의 이코노미석 왕복 비행기 표, 숙박비, 출장비용 등을 전부 신청기업에서 부담해야하고, 검사기간 또한 검사관 파견 스케줄을 잡는데 3~6개월, 검사관 실사 후 인증 발급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어 평균적으로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최근 BIS인증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번 BIS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 없이 추가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니 우리기업들은 BIS 주요 인증대상 품목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BIS Mark제도 주요 인증필요 품목: 시멘트, 가전제품, 배터리, 자동차 약세서라, 실린더, 의류기기, 철강 및 화학 제품 등

03

인도 인증규격 기준과 제품 사양 상이

 주요 포인트

인도로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표준국(이하, BIS) 인증을 사전에 획득해야 한다. 인도 BIS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철강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BIS 인증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으며, 수출자들은 분류된 BIS 카테고리를 토대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 몇몇 철강 품목들이 BIS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못하면서, 해당 철강을 인증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례

한국 A사는 인도 P사와 수년간 제품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인도 정부에서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BIS 인증 의무를 발표하였다. 인도 세관 통관을 위해서 BIS 인증 취득 후, 해당 제품에 라벨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최종 인증 취득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이지만,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양사는 인증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2019년 10월, 신청 서류 제출 약 한달 후, 인도 BIS 기관에서 한국 A사의 제품사양이 BIS 표준 규격에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한국 A사 제품은 비정형 모양(Irregular shape)의 냉연압출품으로, Indian Standard(IS)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이었던 것이다.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할애한 상태이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하여 인증 규격 신청을 최종적으로 철회하였다. BIS 관련 당국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하였지만 회신은 없었다. 이후 관련 당국의 담당자로부터 향후 비정형 모양(Irregular shape)도 BIS 규격 카테고리에 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식적인 답변만을 받은 상황이다.

 전문가 코멘트

현재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은 BIS 인증 대상이다. 각 철강품목은 제품과 스펙에 따라 국제 철강규정인 Indian Standard(IS)에 따라 인도 BIS 인증을 받아야하나, 아직까지 인도 BIS 철강 분류표가 모든 철강 스펙을 포함시키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는 이러한 특정 품목들을 통관하기 위해 '사전설명(Clarification in Advance)' 제도를 2019년 5월 재정하였으며, BIS 철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수입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Clarification in Advance 작성 양식:

<https://steel.gov.in/sites/default/files/Format%20for%20clarification%20or%20exemption%20May%202019.xlsx>

● 가이드라인:

https://steel.gov.in/sites/default/files/Informations_bulletin_Q-wise_7th_May_2019.pdf



참고1 인도 주요 기관 연락처

연번	기관명	담당자	직위	Tel	Email	비고
1	간접세위원회 (CBIC)	헬프데스크	-	+91-1800-1200232	cbicmitra.helpdesk@icegate.gov.in	관세·통관
		M. Ajit Kumar Chairman	Chairman	+91-11-23092849	ajit.m@gov.in prabakar.tndri@nic.in	
2	중앙의약품 통제국 (CDSCO)	헬프데스크	-	+91-11-23236973	dci@nic.in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
		Dr. V. G. Somani	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	+91-11-23236965		
3	식품안전처 (FSSAI)	헬프데스크	-	+91-11-24369458	aodelhi@fssai.gov.in	식품 인증
		Dr. Amit Sharma	Director (Imports)	+91-11-23220991 /37436	dramit.sharma@fssai.gov.in	
4	인도표준국 (BIS)	헬프데스크	-	+91-12-04670227	nits@bis.org.in	철강, 전자기기 등 인증
		Mr. Pramod Kumar Tiwari	Director General	+91-11-23237991 /36980	dg@bis.gov.in	
5	대외무역총국 (DGFT)	헬프데스크	-	+91-1800-111550	dgftedi@nic.in	수출입 제한·금지
		Mr. Hardeep Singh	Additional DGFT	+91-11- 23063466	Hardeep.singh@nic.in Nirmal.gill62@gov.in	
6	무역구제총국 (DGTR)	헬프데스크	-	+91-11-2334943	dgtr-india@gov.in	무역구제
		Mr. Bidyut Behari Swain	Special Secretary & Director General	+91-11- 23408700 /08724	dirgen-dgtr@gov.in	
7	델리세관 (Delhi Customs, ACC-Export)	Ms. Arti Agarwal Srinivas	Commissioner	+91-11-25655385	accexport.delhi@icegate.gov.in	
8	델리세관 (Delhi Customs, ACC-Import)	Mr. Upender Gupta	Principal Commissioner	+91-11-25652970	accimpdel-hqrs@gov.in, commraccimp-cusdel@nic.in	
9	델리세관 (Delhi ICD Tughlakabad)	Mr. Mohan Kumar Singh	Principal Commissioner	+91-11-26368845	commrtkdimp-cusdel@nic.in	

◆ 해당 고시 링크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0/cs-nt2020/csnt81-2020revised.pdf>

◆ 해당 회보 링크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circulars/cs-circulars-2020/Circular-No-38-2020.pdf>

◆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nfo.do?mi=3556&nttSn=10054132>

● 개요

- (법률명)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약어 CAROTAR 2020)

• 2월 연방예산안 내 28DA 신설을 발표하며 사후(수입 후 5년 내) 자료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나, 당시 세부 내용은 미발표

- (시행일) 2020년 9월 21일

- (주요 내용)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발 관세혜택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보유·제출 의무

● 주요 변경사항

-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수입자 제출 서류 추가 (첨부 참조)

-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제출 외에도 수입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역 인지 및 증명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 보유 필요

- 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관련 추가 정보 요구 가능

• 수입자는 이를 영업일 10일 내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증명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세관은 동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시행



인도정부 통관방식 변경을 통한 원산지 관리 강화 정보

● 주요 서류

■ Form I(Section II)

- 동 정보는 수입신고서 제출 이후 기재(To be filled after filing of Bill of Entry)
- 수입자명(Name of the importer)
- 수입신고서 제출번호 및 날짜(Bill of Entry (B/E)No. and Date)
- 수입신고서 제출 세관(Customs Station where B/E was filed)
- 관세혜택 물품(Goods on which preferential rate of duty has been claimed)

■ Part A(Section III)

- 동 정보는 물품 수입 전 보유하고 있어야 함(This information should be possessed before import of goods)
- 수입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단히 서술
(예시) ▲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or produced) ▲ 부가가치 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
▲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in Tariff Head) ▲ 6단위HS CODE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소호변경) ▲ 2단위 HS CODE변경(CC, Change of Chapter, 류변경) 등
- 완전생산제품의 경우 FTA 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왜 완전생산제품인지 프로세스를 설명할 것
- 완전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입할 것

제품 설명	생산 프로세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구분

■ Part B(Section III)

- 완전생산제품이 아닐 경우, 수입품별 각 별지에 작성
→ HS code에 따른 제품별 각 원산지 재료 부품에 대해 아래를 작성할 것.
*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원산지 재료가 없을 경우) None 이라고 적을 것

원산지 재료·부품 설명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생산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제3자로부터 생산자가 현지 구매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제3자로부터 구매했다면, 생산자가 동 재료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예/아니오)
1.			
2.			

* 증빙이 안 될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 추가 정보 기입

a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하였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비율 또는 양을 서술하십시오
b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누적기준을 적용하였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누적방식 및 범위를 서술하십시오
c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간접재료, 중간재, 중립요소 등이 적용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사용된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또한 포함된 재료를 서술하십시오
d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적용하였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아래 정보를 서술하십시오 1) 현지 구매 비율 2) 역내 발생 부가가치 구성요소(재료비, 이익, 인건비, 오버헤드 코스트 등)
e	원산지 재료 인정을 위해 CTC 방식이 적용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를 적으시오
f	프로세스 룰(공정기준)을 적용하였는가? *동 기준은 고시 내 설명되어 있음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적용기준을 서술하십시오
g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급 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사유를 서술하십시오
h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탁송된 것인가?	예/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FTA 조항에 따라 그렇게 확인된 바 있는가? 이 제품이 직접운송의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KOTRA자료 20-198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0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뉴델리무역관
I S B N 979-11-6490-476-1(93320)
979-11-6490-477-8(95320) (PDF)



KOTR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